

공개강좌 운영규정

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
2022. 04. 12. 제정
2022. 11. 24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 제90조의2 및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칙 제7조 제4호에 따라 법학 관련분야의 공개강좌 및 전문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개강좌”란 정규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연구, 직무훈련, 기술습득, 교육증진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내의 교육과정을 말한다.
2. “기타 비학위과정”이란 본교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과정을 말한다.

제3조(원장의 의무) 법무대학원장(이하 ‘원장’이라고 한다)은 공개강좌 및 기타 비학위과정(이하 이들 과정을 통칭하여 ‘과정’이라 한다)을 신의성실하게 운영하고, 관련분야의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관련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합리적인 법률문화가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대학원위원회) ①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고 한다)는 과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2. 과정의 개설승인,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(개설과정의 명칭 지정, 변경 등을 포함한다)
3. 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수강료 및 운영경비 또는 간접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위원회의 구성, 운영, 결의에 관한 사항은 법무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.

제5조(주임교수 등) ① 과정에는 개설되는 강좌별로 주임교수와 강좌운영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. 필요한 경우에는 부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/또는 법무대학원 전임교수 중에서 주임교수와 부주임교수를 위촉한다.

제6조(수강생의 선발 등) ① 수강생은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며, 선발 시 학력, 직업,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개설 과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강생의 총원을 결정한다.

③ 위원회는 수강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수강생의 안정적 확보 등 위원회가 본 과정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④ 수강생 선발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(법무대학원 포함)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3명의 선발위원회를 설치한다. 선발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, 선발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임

한다.

제7조(이수기간 및 이수시간)

과정은 학기별로 개설한다. 다만, 개설강좌의 성격,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서는 학기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개설할 수 있다.

제8조(수료 및 사정기준) ① 수료 여부는 출석일수와 발표, 토론 등 수업참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② 출석일수는 총 강좌 중에서 70%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회는 재직기관의 공무수행(단 2회), 천재지변, 법정감염병 등 기타 사정으로 수강생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기초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

③ 수료사정은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료증서의 수여)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상벌) ① 소정의 과정 이수자 중 출석일수, 주제발표성적, 기여도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을 한다.

② 수강생이 과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으로서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.

제11조(예산 및 결산) 개설강좌별 주임교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강좌의 개설 1달 전까지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, 위원회는 위 예산안을 확정한다. 위원회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과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. 6. 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정일) 이 규정은 2022. 11. 24.부터 시행한다.